

■ 교육

유에스 뉴스, 2021년도 미국 대학 순위 발표



▲ 프린스턴대학교 Holder Hall 전경. 사진=shutterstock

유에스 뉴스가 2021년도 미국 대학 랭킹/순위를 발표했다.

US News 측은 “전염병으로 인해 전국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취소하고 직접 수업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전환했다.”며 “학생들이 그들의 대학 진로 계획을 약간 바꾸었던 아니면 완전히 바꾸었던 간에,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로 남아 있다.”고 미국 대학 순위 발표에 의미를 부여했다.

유에스 뉴스가 발표한 주요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미국 최우수 대학

▶ 연구중심 대학: 1위 프린스턴, 2위 하버드, 3위 컬럼비아, 4위 MIT, 예일, 6위 스탠퍼드, 시카고 8위 유펜, 9위 칼텍, 존스홉킨스

▶ 리버럴 아츠 칼리지: 1위 윌리엄스, 2위 암헤스트, 3위 스와스모어, 4위 포모나, 웰즐리, 6위 보도인, 클레어몬트 매케나, 해군사관학교, 9위 칼튼, 해밀턴, 미들버리, 워싱턴 앤 리

▶ 주립대학교: 1위 UCLA, 2위 UC Berkeley 3위 미시건

▶ 주립 리버럴 아츠 칼리지: 1위 해군사관학교, 2위 육군사관학교, 3위 공군사관학교

2021년 순위에서 연구중심대학 1위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윌리엄스 칼리지가 1위를 차지했다. 주립대학 1위는 UCLA가, 그리고 주립 LAC 1위는 해군사관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US News & World Report Best College 랭킹은 1983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대학 순위 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대학 순위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LAC), 지역유니버시티, 지역 칼리지, 그리고 지역대학은 그룹별로 북, 남, 중서, 서로 더 나뉘어서 평가한다. 이 순위는 U.S. News & World Report가 각 학교에 보낸 연례 조사 자료와 다른 학교의 교직원 및 관리자에 대한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자료로 대학들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적합성을 무시하며 의심스러운 자료를 바탕으로 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정확성과 대학입시에 광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 전문가들도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그냥 맹신할 것이 아니라, 대학 선택의 자료 가운데 하나로 참고를 하면 좋을 것이다.

https://www.usnews.com/best-colleges?int=top_nav_Colleges를 방문하면 카테고리별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생활 · 문화

코로나19 기간 동안 SMALL BUSINESS가 받을 수 있는 IRS CREDIT

■ 직원 유지 크레딧 (EMPLOYEE RETENTION CREDIT)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REFUND 가능한 세금 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격 고용주가 지급한 최대 \$10,000 임금의 50%까지 가능하다.

■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함

1. 고용주의 사업은 해당 분기 동안 COVID-19로 인해 정부 명령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을 것.

2. 고용주의 총 수입은 2019년 비교 분기의 50% 미만으로, 고용주의 총 수입이 2019년에 비교 가능한 분기의 80%를 초과하면 해당 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자격이 상실됨.

■ 유급 병가 크레딧 및 가족 휴가 크레딧

1.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자가 격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재택 근무 포함),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고 의료 진단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이러한 직원은 하루 최대 \$ 511, 총 \$ 5,110의 정규 급여로 최대 10일 (최대 80시간) 동안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음.

2. 고용주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돌보거나, 아이의 학교나 데이케어 가 문을 닫았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급 데이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여 일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직원은 직원의 정규 급여율의 2/3 또는 하루 최대 \$200, 총 \$2,000불 한도로 최대2주 (최대 80시간) 동안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음.

3. 고용주는 공제액만큼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급여세의 예치금 (DEPOSIT)을 줄임으로써 공제금을 즉시 상환 받을 수 있음.

4. 적격 고용주는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필수 병가 및 가족 휴가 관련 건강 보험 비용 및 휴가에 대한 고용주의 메디케어 세금 부담액에 대한 크레딧을 즉시받을 수 있으며, 환불 가능한 크레딧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고용세 (PAYROLL TAX)에 적용됨.

■ 고용주는 어떻게 크레딧을 받습니까?

1. 고용주는 공제액만큼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된 급여세의 필수 예치금 (DEPOSIT)을 줄임으로써 공제금을 즉시 상환받을 수 있음.

2. 적격 고용주는 2020년 2분기부터 분기별 고용세 신고서 또는 IRS 양식 941에 분기별 총 적격 임금 및 관련 건강보험 비용을 보고함. 고용주의 고용세 예치금이 크레딧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양식 7200, COVID-19로 인한 고용주 크레딧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IRS로부터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음.

한편 EDD가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중단했던 신규 CLAIM 접수를 오는 10월 5일(월)부터 재시작한다.

▶ 문의: taxcapital@gmail.com (PREMIER TAX GROUP)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